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AA10-1블록)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0-1블록
 ■ 공급대상 : 민간참여형 분양주택 / 지하2층 ~ 지상25층 / 14개동 / 총 1,4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1,166세대(전용면적 59㎡ 583세대, 84㎡ 583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292세대(전용면적 104㎡ 292세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주요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 제57조 등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민간참여 공공분양]	· 특별공급(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제외)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세대 자산보유 기준 적용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주택 - 재당첨 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 거주유무기간 없음	· 공급세대수의 50% :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 나머지 50% :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점자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천도시공사 사행하는 사업으로서 ①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민간참여형 분양주택입니다.
 - 청약신청 시 ①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②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유형별 청약가능 주택형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 (본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민영주택
전용면적 59㎡, 84㎡	전용면적 104㎡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2023.04.0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제4호 가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3년(다만, 해당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적용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사항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www.elife.co.kr>)운영과 주택전시관 방문관람으로 운영(2023.09.22.(금) 개관)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고객센터(032-278-15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32-278-1500)실시할 예정이오니,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2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448이며, 공고문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홈페이지(<http://www.elif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청약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 전체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점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입국 후 7일 내 동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번호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낙속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개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3년이 적용되며,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제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거주무	최초 입주가능일	-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제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제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제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3.10.04.(수)	2023.10.05.(목)	2023.10.06.(금)	2023.10.13.(금)	2023.10.17.(화) ~2023.10.22.(일)	2023.11.27.(월) ~2023.12.03.(일)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주택전시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비고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동호수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홈페이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 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천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필요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12개월, 12회 이상)	필요 (12개월, 12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12개월, 12회 이상)	필요
소득 또는 자산 기준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60㎡이하 주택에 한함)	적용 (60㎡이하 주택에 한함)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 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AA10-1블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에 따라 특별공급 (과거 3차례 우선공급, 노부모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부터 제14호 까지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1. 공급 규모

- **민간참여형 분양주택(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5층, 14개동, 총 1,458세대 중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이하) 1,166세대**
[특별공급 809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3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32세대, 노부모양 특별공급 57세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56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2. 공급대상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공공분양주택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01	059.9077A	59A	059.9077	18.7671	78.6748	40.1341	118.8089	42.5796	271	14	28	27	54	54	14	191	80	10
	02	059.9736B	59B	059.9736	19.6449	79.6185	40.1782	119.7967	42.6264	312	15	33	32	62	62	15	219	93	9
	03	084.8925A	84A	084.8925	25.6055	110.4980	56.8722	167.3702	60.3377	393	19	37	39	79	79	19	272	121	12
	04	084.8513B	84B	084.8513	25.1818	110.0331	56.8446	166.8777	60.3084	50	2	5	5	10	10	2	34	16	2
	05	084.6813C	84C	084.6813	27.0802	111.7615	56.7308	168.4923	60.1876	124	6	13	12	25	25	6	87	37	4
	07	084.8344T	84T	084.8344	26.9707	111.8051	56.8333	168.6384	60.2964	14	-	-	1	2	2	1	6	8	-
	06	084.9424P	84PH	084.9424	28.4354	113.3778	56.9057	170.2835	60.3731	2	-	-	-	-	-	-	-	2	-
합 계										1,166	56	116	116	232	232	57	809	357	37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중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비 등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6년 07월로 예정 되어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 "디엘이앤씨(주) 외 5개 업체"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명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AA10-1블록
-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 디엘이앤씨(주) / 신동아건설(주) / ㈜보광종합건설 / ㈜국원건설 / 청암종합건설(주) / ㈜선두종합건설
- 시공자 : 디엘이앤씨(주) / 신동아건설(주) / ㈜보광종합건설 / ㈜국원건설 / 청암종합건설(주) / ㈜선두종합건설

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용자금 제외금액	용자금 (주택도시보증)
							2024.04.15.	2024.09.13.	2025.02.14.	2025.07.15.	2025.11.14.	2026.03.13.	입주지정일	
59A	1층	10	175,424,050	185,975,950	361,40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53,420,000	55,000,000
	2층	11	175,424,050	189,975,950	365,40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54,620,000	
	3층	11	175,424,050	193,575,950	369,0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55,700,000	
	4층	11	175,424,050	197,575,950	373,0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56,900,000	
	5~15층	121	175,424,050	205,175,950	380,60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59,180,000	
	16층 이상	107	175,424,050	208,775,950	384,20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60,260,000	
59B	1층	9	175,616,862	175,583,138	351,20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35,120,000	50,360,000	55,000,000
	2층	13	175,616,862	179,583,138	355,200,000	35,520,000	35,520,000	35,520,000	35,520,000	35,520,000	35,520,000	35,520,000	51,560,000	
	3층	13	175,616,862	183,283,138	358,90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52,670,000	
	4층	13	175,616,862	186,883,138	362,500,000	36,250,000	36,250,000	36,250,000	36,250,000	36,250,000	36,250,000	36,250,000	53,750,000	
	5~15층	143	175,616,862	194,183,138	369,80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55,940,000	
	16층 이상	121	175,616,862	197,883,138	373,50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57,050,000	
84A	1층	12	248,585,795	280,414,205	529,0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83,700,000	75,000,000
	2층	16	248,585,795	286,014,205	534,600,000	53,460,000	53,460,000	53,460,000	53,460,000	53,460,000	53,460,000	53,460,000	85,380,000	
	3층	16	248,585,795	291,614,205	540,20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87,060,000	
	4층	16	248,585,795	297,214,205	545,800,000	54,580,000	54,580,000	54,580,000	54,580,000	54,580,000	54,580,000	54,580,000	88,740,000	
	5~15층	176	248,585,795	307,914,205	556,50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91,950,000	
	16층 이상	157	248,585,795	313,514,205	562,10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56,210,000	93,630,000	
84B	1층	2	248,465,081	283,334,919	531,800,000	53,180,000	53,180,000	53,180,000	53,180,000	53,180,000	53,180,000	53,180,000	84,540,000	75,000,000
	2층	2	248,465,081	288,934,919	537,40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86,220,000	
	3층	2	248,465,081	294,534,919	543,0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87,900,000	
	4층	2	248,465,081	300,134,919	548,60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89,580,000	
	5~15층	22	248,465,081	311,234,919	559,70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55,970,000	92,910,000	
	16층 이상	20	248,465,081	316,834,919	565,30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56,530,000	94,590,000	
84C	1층	4	247,967,396	276,232,604	524,200,000	52,420,000	52,420,000	52,420,000	52,420,000	52,420,000	52,420,000	52,420,000	82,260,000	75,000,000
	2층	5	247,967,396	281,932,604	529,90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83,970,000	
	3층	5	247,967,396	287,032,604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85,500,000	
	4층	5	247,967,396	292,732,604	540,70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87,210,000	
	5~15층	55	247,967,396	303,532,604	551,50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90,450,000	
	16층 이상	50	247,967,396	309,232,604	557,20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92,160,000	
84T	1층	7	248,415,642	318,084,358	566,50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94,950,000	75,000,000
	2층	7	248,415,642	323,784,358	572,20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57,220,000	96,660,000	
84PH	16층 이상	2	248,731,639	450,268,361	699,0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134,700,000	75,00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분양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상(청약시)주택형	59.9077A	59.9736B	84.8925A	84.8513B	84.6813C	84.8344T	84.9424P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84T	84PH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총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총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차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 시 대출규제 등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6-670045	인천도시공사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계좌(가상계좌) 부여		

- ※ 공급대금의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00-036-670045,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로 관리합니다.
-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인천도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계좌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울선)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금 납부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전시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전시관에서 현금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4.04.15.	입주예정기간
59A	3,303,000	330,300	330,300	2,642,400
59B	3,972,000	397,200	397,200	3,177,600
84A	4,829,000	482,900	482,900	3,863,200
84B	4,695,000	469,500	469,500	3,756,000
84C	5,083,000	508,300	508,300	4,066,400
84T	4,055,000	405,500	405,500	3,244,000
84PH	7,623,000	762,300	762,300	6,098,400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각 주택형별 발코니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나,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와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시	신한은행	100-036-670077	인천도시공사
중도금	공급금액의 10%	2024.04.15.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계좌(가상계좌) 부여		
잔금	공급금액의 80%	입주시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관련 유의사항

※ 'Ⅷ 기타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

※ 추가 선택품목(I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고 이외 품목의 경우 추후 별도로 공시하고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II)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무상선택 품목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내용(색상)		비고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천타입	ALT1	실버베이트	색상 선택가능 (무상선택 색상에 따라 유상선택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동일색상 적용함)
		ALT2	알파마요	

■ 유상선택 품목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	설치대수	구성내용(적용범위)	판매가격	비고			
59A, 59B	일반형	LG /삼성 택1	ALT1	2	거실+침실1	3,40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ALT2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50,000		
	프리미엄	LG	ALT3	2	거실+침실1	3,58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프리미엄 일반형
			ALT4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400,000		
	비스포크	삼성	ALT5	2	거실+침실1	4,22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비스포크형
			ALT6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600,000		
84A, 84B, 84C, 84T	일반형	LG /삼성 택1	ALT1	2	거실+침실1	3,60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ALT2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550,000		
	프리미엄	LG	ALT3	2	거실+침실1	3,80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프리미엄 일반형
			ALT4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비스포크	삼성	ALT5	2	거실+침실1	4,54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비스포크형
			ALT6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8,190,000		
84PH	일반형	LG /삼성 택1	ALT1	3	거실+복도+침실1	5,35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ALT2	5	거실+복도+침실1+침실2+침실3	8,200,000		
	프리미엄	LG	ALT3	3	거실+복도+침실1	5,60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프리미엄 일반형
			ALT4	5	거실+복도+침실1+침실2+침실3	8,600,000		
	비스포크	삼성	ALT5	3	거실+복도+침실1	6,690,000		홈네트워킹 연결기능 포함 비스포크형
			ALT6	5	거실+복도+침실1+침실2+침실3	10,25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모델은 주택형별, 실별, 가전사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로 세부안내 예정입니다.

(2)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비고	
빌트인냉장고 + 김치냉장고	오브제컬렉션 SET	LG	오브제컬렉션 4도어 냉장고[BC4S1AA1 (G)] + 오브제컬렉션 3도어 김치냉장고[BC3K1AA1 (G)] + 인출식수납장(W400)	6,450,000	택1 냉장고장 불포함 가격 상품구성 및 디자인, 색상 변경 불가	
			오브제컬렉션 4도어 냉장고[BC4S1AA1 (G)] + 오브제컬렉션 3도어 김치냉장고[BC3K1AA1 (G)] + 인출식수납장(W850)	7,450,000		
			오브제컬렉션 4도어 냉장고[BC4S1AA1 (G)] + 오브제컬렉션 3도어 김치냉장고[BC3K1AA1 (G)] + 인출식수납장(W800)	7,400,000		
	비스포크 SET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RF60B91R2AP (Satin/Glam)] +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RQ33A74E1AP (Satin/Glam)] + 인출식수납장(W400)	6,30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RF60B91R2AP (Satin/Glam)] +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RQ33A74E1AP (Satin/Glam)] + 인출식수납장(W850)	7,30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RF60B91R2AP (Satin/Glam)] +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RQ33A74E1AP (Satin/Glam)] + 인출식수납장(W800)	7,250,000		
식기세척기	빌트인 식기세척기	84A, 84B, 84C, 84T, 84PH	삼성 식기세척기(12인용 / DW60T7065SS)	870,000	택1	
		SK매직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와이드(14인용 / DWA-90R5B)	1,350,000		
		LG	LG DIOS 식기세척기(12인용 / DUB22SB2)	1,160,000		
전기오븐	빌트인 전기오븐	전타입	SK매직	컨벡션 스팀 오븐(EON-B401SA)	650,000	택1 아일랜드장(84T는 하부장 연장) 선택시만 전기오븐 선택가능 (84PH 제외)
			SK매직	IOT 스팀 오븐(EON-B440SA)	1,050,000	
전기쿡탑	하이브리드 쿡탑	전타입	SK매직	2인덕션+1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ERAHF33L)	850,000	택1 미선택시 가스 3구 쿡탑 제공
	인덕션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IHR-BQ40E)	1,950,000	
주방TV	스마트 주방TV	전타입	동영애펙	13" 음성인식 스마트 주방TV(DM-N330V)	800,000	미선택시 10" 주방TV 제공

(3) 불박이 가구(주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냉장고장	59A, 59B	냉장고장(W2,000)	1,350,000	-	
	84A	냉장고장(W2,000) + 키큰장(W450)	1,670,000	-	
	84B	냉장고장(W2,000)	1,350,000	-	
	84C	냉장고장(W2,000) + 키큰장(W1,000) + 가전소물장(W600)	2,100,000	-	
	84T	냉장고장(W2,000) + 키큰장(W400)	1,650,000	-	
	84PH	냉장고장(W2,000) + 가전소물장(W600)	1,600,000	-	
아일랜드장	59A	아일랜드장(엔지니어드스톤+일반 PET)	1,620,000	아일랜드장 상판 색상은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무상선택 품목) 색상 선택에 따라 동일 색상 적용	
	59B	아일랜드장(엔지니어드스톤+일반 PET)	1,200,000		
	84A	아일랜드장(엔지니어드스톤+일반 PET)	2,180,000		
	84B, 84C	아일랜드장(엔지니어드스톤+일반 PET)	1,870,000		
주방가구 연장	84T	주방가구 하부장 연장(ㄷ자 주방)	950,000	-	
주방가구 도어변경	59A	ALT-1	주방가구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190,000	택1
		ALT-2	주방가구 + 아일랜드장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370,000	
	59B	ALT-1	주방가구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200,000	택1
		ALT-2	주방가구 + 아일랜드장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350,000	
	84A	ALT-1	주방가구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210,000	택1
		ALT-2	주방가구 + 아일랜드장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440,000	
	84B	ALT-1	주방가구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190,000	택1
		ALT-2	주방가구 + 아일랜드장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420,000	
	84C	ALT-1	주방가구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280,000	택1
		ALT-2	주방가구 + 아일랜드장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510,000	
	84T	ALT-1	주방가구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400,000	택1
		ALT-2	주방가구 + 아일랜드장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510,000	
	84PH		주방가구 도어마감 변경(무늬목 PET 도어_하부장)	470,000	-
	주방 대형팬트리장	84B	주방 대형팬트리장(W2,000)	3,070,000	주방대형팬트리장은 냉장고장을 선택해야만 선택가능
84C		주방 대형팬트리장(W1,000)	1,700,000		

(4) 붙박이 가구(침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침실1 드레스룸 가구	59A	ALT1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드레스룸도어(유리) + 시스템가구	3,57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	3,800,000	
		ALT3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730,000	
	59B	-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 드레스룸도어(유리) + 시스템가구	3,500,000	-
	84A	ALT1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드레스룸도어(유리) + 시스템가구	3,70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	3,880,000	
		ALT3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4,020,000	
	84B	ALT1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 드레스룸도어(유리) + 시스템가구	3,78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 + 오픈형수납장	7,610,000	
		ALT3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오픈형수납장	7,680,000	
	84C	ALT1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드레스룸도어(유리) + 시스템가구	3,62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	3,770,000	
		ALT3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730,000	
	84T	-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 상판)+드레스룸도어(유리)+시스템가구	4,070,000	-
84PH	ALT1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드레스룸도어(유리) + 시스템가구	3,55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	3,620,000		
	ALT3	대형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580,000		
침실1 붙박이장	59A		침실1 붙박이장	1,645,000	-
	59B		침실1 붙박이장	1,950,000	-
	84A, 84B		침실1 붙박이장	2,240,000	-
	84C		침실1 붙박이장	2,190,000	-
	84T		침실1 붙박이장	2,100,000	-
	84PH		침실1 붙박이장	1,860,000	-
침실2 붙박이장	59A, 59B		침실2 붙박이장	1,210,000	-
	84A, 84B, 84C, 84T		침실2 붙박이장	1,330,000	-
	84PH		침실2 붙박이장	1,400,000	-
			침실3 붙박이장	1,210,000	-
침실3 붙박이장	59A		침실3 붙박이장	1,210,000	-
	59B		침실3 붙박이장	1,330,000	-
	84A, 84B, 84C, 84T, 84PH		침실3 붙박이장	1,400,000	-

(5) 현관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오픈형 현관장	전타입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신발살균기 + 에어브러쉬		1,200,000	-
현관중문	59A, 84B	ALT1	양개여닫이형(그레이)	1,750,000	택1
		ALT2	양개여닫이형(브론즈)	1,750,000	
	59B, 84A, 84C, 84T, 84PH	ALT1	3연동 슬라이딩(그레이)	1,800,000	택1
		ALT2	3연동 슬라이딩(브론즈)	1,800,000	

(6) 마감재 선택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	구성내용 (적용범위 : 거실+주방)	구성내용 (적용범위 : 침실)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판매가격	비고
바닥마감	59A	ALT1	플렉스 스퀘어마루 (스톤그레이)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310,000	택1
		ALT2			노르딕플렉스(143mm)	1,310,000	
		ALT3			골든플렉스(143mm)	1,310,000	
		ALT4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960,000	
		ALT5			노르딕플렉스(143mm)	960,000	
		ALT6			골든플렉스(143mm)	960,000	
	59B	ALT1	플렉스 스퀘어마루 (스톤그레이)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210,000	택1
		ALT2			노르딕플렉스(143mm)	1,210,000	
		ALT3			골든플렉스(143mm)	1,210,000	
		ALT4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900,000	
		ALT5			노르딕플렉스(143mm)	900,000	
		ALT6			골든플렉스(143mm)	900,000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	구성내용 (적용범위 : 거실+주방)	구성내용 (적용범위 : 침실)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판매가격	비고
	84A	ALT1	플렉스 스퀘어마루 (스톤그레이)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780,000	택1
		ALT2			노르딕플렉스(143mm)	1,780,000	
		ALT3			골든플렉스(143mm)	1,780,000	
		ALT4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290,000	
		ALT5			노르딕플렉스(143mm)	1,290,000	
		ALT6			골든플렉스(143mm)	1,290,000	
	84B	ALT1	플렉스 스퀘어마루 (스톤그레이)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850,000	택1
		ALT2			노르딕플렉스(143mm)	1,850,000	
		ALT3			골든플렉스(143mm)	1,850,000	
		ALT4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330,000	
		ALT5			노르딕플렉스(143mm)	1,330,000	
		ALT6			골든플렉스(143mm)	1,330,000	
	84C	ALT1	플렉스 스퀘어마루 (스톤그레이)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740,000	택1
		ALT2			노르딕플렉스(143mm)	1,740,000	
		ALT3			골든플렉스(143mm)	1,740,000	
		ALT4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270,000	
		ALT5			노르딕플렉스(143mm)	1,270,000	
		ALT6			골든플렉스(143mm)	1,270,000	
84T	ALT1	플렉스 스퀘어마루 (스톤그레이)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580,000	택1	
	ALT2			노르딕플렉스(143mm)	1,580,000		
	ALT3			골든플렉스(143mm)	1,580,000		
	ALT4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150,000		
	ALT5			노르딕플렉스(143mm)	1,150,000		
	ALT6			골든플렉스(143mm)	1,150,000		
84PH	ALT1	플렉스 스퀘어마루 (스톤그레이)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2,160,000	택1	
	ALT2			노르딕플렉스(143mm)	2,160,000		
	ALT3			골든플렉스(143mm)	2,160,000		
	ALT4	동조플렉스 강마루 (색상 택1)		모던플렉스(143mm)	1,490,000		
	ALT5			노르딕플렉스(143mm)	1,490,000		
	ALT6			골든플렉스(143mm)	1,49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주방마감	59A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 조리대 조명	900,000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색상은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무상선택 품목) 색상 선택에 따라 동일 색상 적용
	59B		1,020,000	
	84A		700,000	
	84B		720,000	
	84C		1,350,000	
	84T		1,410,000	
	84PH		1,06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	구성내용(적용범위)	세라믹패널 색상	판매가격	비고	
거실마감 (세라믹 패널)	59A	ALT1	거실1개면(아트월) + 주방1개면	DUOMO	3,450,000	택1	
		ALT2		BLUESTONE GRIS	3,450,000		
		ALT3		CALACATTA MIX	3,450,000		
		ALT4	거실1개면(아트월) + 주방1개면 + 거실1개면(쇼파후면) + 복도일부면 + 거실창면(디자인패널)		DUOMO		6,150,000
		ALT5			BLUESTONE GRIS		6,150,000
		ALT6			CALACATTA MIX		6,150,000
	59B	ALT1	거실1개면(아트월) + 주방1개면	DUOMO	3,150,000	택1	
		ALT2		BLUESTONE GRIS	3,150,000		
		ALT3		CALACATTA MIX	3,150,000		
		ALT4	거실1개면(아트월) + 주방1개면 +	DUOMO	5,900,000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	구성내용(적용범위)	세라믹패널 색상	판매가격	비고
		ALT5	거실1개면(쇼파후면) + 복도일부면 + 거실창면(디자인패널)	BLUESTONE GRIS	5,900,000	택1
		ALT6		CALACATTA MIX	5,900,000	
	84A	ALT1	거실1개면(아트월) + 주방1개면	DUOMO	3,930,000	
		ALT2		BLUESTONE GRIS	3,930,000	
		ALT3		CALACATTA MIX	3,930,000	
		ALT4		DUOMO	6,900,000	
		ALT5		BLUESTONE GRIS	6,900,000	
		ALT6		CALACATTA MIX	6,900,000	
	84B	ALT1	거실1개면(아트월) + 주방1개면	DUOMO	3,650,000	
		ALT2		BLUESTONE GRIS	3,650,000	
		ALT3		CALACATTA MIX	3,650,000	
		ALT4		DUOMO	6,680,000	
		ALT5		BLUESTONE GRIS	6,680,000	
		ALT6		CALACATTA MIX	6,680,000	
	84C	ALT1	거실1개면(아트월) + 주방1개면	DUOMO	2,700,000	
		ALT2		BLUESTONE GRIS	2,700,000	
		ALT3		CALACATTA MIX	2,700,000	
		ALT4		DUOMO	5,810,000	
ALT5		BLUESTONE GRIS		5,810,000		
ALT6		CALACATTA MIX		5,810,000		
84T	ALT1	거실1개면(아트월)	DUOMO	1,630,000		
	ALT2		BLUESTONE GRIS	1,630,000		
	ALT3		CALACATTA MIX	1,630,000		
	ALT4		DUOMO	4,920,000		
	ALT5		BLUESTONE GRIS	4,920,000		
	ALT6		CALACATTA MIX	4,920,000		
84PH	ALT1	거실1개면(아트월)	DUOMO	1,800,000		
	ALT2		BLUESTONE GRIS	1,800,000		
	ALT3		CALACATTA MIX	1,800,000		
	ALT4		DUOMO	5,230,000		
	ALT5		BLUESTONE GRIS	5,230,000		
	ALT6		CALACATTA MIX	5,23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거실마감 (디자인 패널)	59A	거실1개면(쇼파후면) + 복도일부면 + 거실창면	890,000	세라믹패널 ALT4, ALT5, ALT6 선택시 중복선택 불가
	59B		1,200,000	
	84A		1,020,000	
	84B		1,020,000	
	84C		1,020,000	
	84T		1,040,000	
	84PH		거실1개면(쇼파후면) + 복도일부면 + 거실창면 + 식당창주변 + 복도창주변(테라스1) + 알파공간창주변(테라스3)	

(7) 욕실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욕실조명특화	전타입	욕실장간접조명 + 센서미등 (욕실1+욕실2)	530,000	-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1+욕실2)	750,000	미선택시 분리형비데(욕실1) 기본으로 설치됨

(8) 탄성코트 도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탄성코트 도장	59A	발코니1, 하향식 피난구 (벽+천정) 탄성코트 도장	680,000	-
	59B		640,000	-
	84A		730,000	-
	84B		760,000	-
	84C	740,000	-	
	84T	다용도실 (벽+천장) 탄성코트 도장	480,000	-
	84PH	대피공간, 발코니 (벽+천장) 탄성코트 도장	800,000	-

(9) 조명&디밍제어 시스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59A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장시트패널	3,000,000	-
	59B, 84A, 84B, 84C		4,090,000	-
	84T		4,100,000	-
	84PH		4,060,000	-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 시스템	전타입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1+침실2+침실3)	1,780,000	12단계 밝기/색온도제어조명 + 테두리간접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 색온도디밍제어 시스템 기본제공 품목이며, 옵션 선택 시 업그레이드 제공)

■ 추가선택품목(II)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II)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II)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II)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설치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계약자 부담임)
- 추가선택품목(II)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 (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II)의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가능기간은 추가선택품목(II) 계약 시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II)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해당 제품의 생산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기술적사항 변경 등의 사유), 혹은 품질, 품귀 등의 사유 발생 시 동제조사의 동종, 동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통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II)의 판매가격은 기본 설계안 또는 추가선택품목(I)으로 시공되는 부분에서 추가선택품목(II) 선택으로 인하여 미시공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책정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의 하자관리 및 하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는 민간사업자인 "디엘이앤씨(주) 외 5개 업체"에서 담당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II)의 구성 및 디자인(색상포함),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침실1의 일반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비스포크, 오브제컬렉션의 판매가격에는 주방 냉장고장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방 냉장고장을 계약하여야만 오브제컬렉션 혹은 비스포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오브제컬렉션 모델은 주방공간에 맞춘 디자인한 상품으로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에 대한 변경 및 분리판매는 불가합니다.
- 전기오븐은 아일랜드장 하부에 설치되며, 아일랜드장을 선택시에만 전기오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84T 타입은 하부장연장 옵션 선택 시 전기오븐 선택 가능하며, 84PH 타입은 제외)
-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 전기쿡탑 선택과 무관하게 주방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및 인덕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가구패널 마감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해당금액은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스마트 주방 TV 선택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10" 주방TV는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스마트 주방TV의 음성인식 기능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인터넷 가입 후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TV 설치로 인해 창호 개폐, 가전제품/주방용품 배치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가구(주방포함) 및 빌트인 가전 선택 시 설치 부위 후면 및 바닥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불박이 가구 옵션 선택 시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대형 팬트리장은 냉장고장을 계약하여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침실1 화장대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화장대 크기에 따라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구에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통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오픈형 현관광장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에어브러쉬, 신발정소기는 설치시점에 이르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유리 포함)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물림,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설치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사이즈 등이 상이할수 있으며 사업주체 홈페이지상 이미지와 실물의 크기, 재질감, 색깔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마감재 옵션 선택시 적용 부위는 지정되어 있으며 변경 불가합니다.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선택 시 자재의 특수성에 따라 자재의 이음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 세대는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선택 시 난방 온도조절기가 통합된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가 설치되며, 화면 구성 및 조작 방식은 기능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조명특화 선택 시 센서 기능이 포함된 다운라이트가 욕실별로 1개소 설치되며, 센서 기능은 스위치 OFF 시에만 심야 유도용 미등이 점등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데일체형 양변기 선택 시 안방욕실(욕실1)에 기본 적용되는 분리형 비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에 대한 홍보물의 이미지와 실제 상품의 크기, 재질감, 색깔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및 디자인(색상포함),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 안내 예정	추후 안내 예정
중도금	공급금액의 20%	2024.04.15.			
잔금	공급금액의 70%	입주시			

- ※ 추가선택품목(II)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통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품목상세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를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주방 터닝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화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들림, 무선AP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타입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84T	84PH
금액	23,980,000	24,267,000	32,204,000	32,069,000	32,572,000	32,099,000	33,043,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류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해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 기준에 맞춰 시공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터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키트,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터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증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 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체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인천도시공사'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계약자는 대납한 이자총액을 입주 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까지)는 실제 입주일(입주증 발급 완료 시까지)까지 '인천도시공사'에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에는 이 계약사상의 연체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공급계약서 상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 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일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납입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점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0.09.29.시행)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 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22.)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점된 자를 포함)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점되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 및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023.10.13.(금))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공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머지 다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대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하였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유주택자)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축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불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합니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23.05.10.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여 자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권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 colspan="2">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 불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된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잔여공급(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모집공고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공고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모집공고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금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희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여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및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철거주택소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지자체, LH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 인천시청·경기도청·서울시청(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인천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인천시청 복지국(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인천시청 여성가족국(다문화가족),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기관추천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m², 세대)

타입 (약식표기)	철거주택 소유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 기능인	우수선수	의사상자 등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합계
59A	1	8	2	2	2	7	1	1	1	1	1	1	28
59B	1	9	2	2	4	8	1	1	1	1	2	1	33
84A	2	11	3	2	5	8	1	1	1	-	2	1	37
84B	-	3	-	-	-	2	-	-	-	-	-	-	5
84C	1	5	1	1	2	2	-	-	-	-	1	-	13
합계	5	36	8	7	13	27	3	3	3	2	6	3	116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 부동산원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10.04)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당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표 1> 지역우선공급에 따르며 동일지역 내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할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천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단위: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 (단위: 원)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생애최초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구분	청약신청 가능 주택형	유의사항
1인 가구	청약 불가	1인 가구 청약 신청 시 부적격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태에서 동별·층별·항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9. 이전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신혼부부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내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만7세 미만을 말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018.12.19. 이전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고
기준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1	-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207,562	6,097,645	6,432,394	6,961,311	7,490,229	8,019,146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항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대상자의 경우 본인 외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은)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위 신청자격을 갖춘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은 위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당 사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의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 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 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 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 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 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 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에 해당되는 분 및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 관리됩니다.
- 동별·층별·방향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 가능한 청약 제한사항	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 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 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로 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주택 우선 매입 안내

-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3.10.13.)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천도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 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및 제101조에 따라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 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또는 주소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일격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3.10.04.(수) (청약 Home :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 (현장접수 : 10:00~14:00)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
일반공급	1순위	2023.10.05.(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10.06.(금) (09:00~17:30)		

-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은행 접수 불가
-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분-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요] 청약 신청자는 직접 주택전시관 관람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www.elife.co.kr)을 통한 공급주택형별 평면도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실물 유닛을 보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 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6>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한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VI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지체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3.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6: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위약계승(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출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상기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는 참고사항이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II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안내 등

1.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공급계약 체결(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동호 추정 및 계약일정
2023.10.13.(금)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2023.10.17.(화) ~ 2023.10.22.(일) 10:00~16:00	2023.11.27.(월) ~ 2023.12.03.(일) 10:00~17:00	추후 일정 당사 홈페이지 고지 (www.elife.co.kr)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주택전시관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동 가능하며 일정 변동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향후 고지하는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계약체결장소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정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0.13.(금) ~ 2023.10.22.(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안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0.1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현장접수(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당첨자 : 2023.10.17.(화) ~ 2023.10.22.(일), 예비입주자 : 추후 일정 고지)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절차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점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분양사무실 방문 서류접수 불가)이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정당계약 체결 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무주택서약서 등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자산·소득 조회용)		급 제외)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및 무주택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1961.01.01. 이전 출생자는 1961.01.01.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개명 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임신증명 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 자녀 ’ 및 ‘ 가구원수 ’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주택전시관에 비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중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본인 발급용 ’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서명가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무허가건물확인서,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소득 정정 사실확인서 및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표6>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의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 시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 이후 정당계약 체결 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무주택서약서 등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할(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및 무주택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1961.01.01. 이전 출생자는 1961.01.01.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공급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세대원과의 관계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 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중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예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 및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번호,출산예정일,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원본)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 및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주택전시관에 비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전시관에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주민등록표 등본(전체 포함)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1961.01.01. 이전 출생자는 1961.01.01.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 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전시관에 비치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배우자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전시관에 비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생애최초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7>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아래 <표7> 참고)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점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점자 또는 당점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점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 당점자 인감도장 날인(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공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서명가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소득 정정 사실확인서 및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 확인서 등

■ <표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점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파견,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 ※ 청약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등본에 분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포함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1961.01.01. 이전 출생자는 1961.01.01.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점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당점유형별 당점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점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② 무통장 입금증 및 입금확인증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③ 당점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④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경우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④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주택전시관에 비치)

	⑤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홈페이지(www.elife.co.kr) 양식 게시 예정] ※ 아파트 공급 금액과 발코니확장 금액 및 추가선택품목(II)의 총액이 6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해당 ⑥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 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제출 - 인지세의 경우 아파트 공급금액과 발코니확장 금액 및 추가선택품목(II) 금액 포함 - 인지세 과세 기준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수입인지가격 15만원 ⑦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기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주택전시판 비지)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대리인 인장(서명가능)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전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인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소비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시공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취소요청서(시공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제세공과금 역시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합니다.

4.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주택전시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내방고객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청약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건식사우나, 독서실, 개인오피스, 키즈체육관, 다함께돌봄센터/키즈라운지, 어린이집 등

4.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2.7M
지하2층	2.3M	2.3M

5. 지구, 단지 여건 및 기타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이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등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주택전시관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량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통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단지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 위탁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세대가 아닌 공용 전기요금으로 부과합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설계개요상 바닥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사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 CS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창고 또는 다목적실 공간을 통한 CS센터로 2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센터에서 사용하던 기자재 및 물품은 사용기간 완료 후 수거함을 알림)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주택전시관 내 단지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주택전시관 내 단지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주택전시관 내 단지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 및 지구내 기반시설(방음벽, 방음터널, 고가도로 등)에 의해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방문 및 주택전시관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으나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소방 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도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인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의 세대창고는 공간만 제공되며, 내부 보관함 설치는 제외됩니다.
- 김포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관련 일체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며 하자관리 및 하자처리관련 일체의 업무는 민간사업자인 “디엘이앤씨(주) 외 5개 업체”에서 담당합니다.

■ 지구 여건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54호, 2022.12.16)로 승인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 심의”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지구계획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의 북서측 7Km 거리에 김포공항신도시, 남서측 10Km 거리에 청라국제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측 10km 거리에 3기신도시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지구의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에서 직선거리 4km 이내에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인천지하철 2호선 원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계양~검단신도시)이 착공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사업 진행중입니다.
- 국도 48호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월당~태리간 도로’, ‘검단~경명로간 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로의 접근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 해당지구 내에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행복주택, 국민대, 영구임대 등 여러 유형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해당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고가도로, 지하차도, 방음벽, 방음터널, 보도육교, 생태육교, 연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구내의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초·중·고등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해당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 및 지구내 건축시설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해당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 사업자의 설치계획 및 기타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비류(취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에 인천영어마을 및 서구영어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해당지구 내 공공정사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관청의 건립시기 조정 및 건립계획 비류(취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에는 배수지, 우수중계펌프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해당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기피시설 유무 (당사업지 주변 북쪽으로 약1.5Km 김포공원묘지, 북쪽 약500m 분묘지 등이 위치함), 종교시설 부지(북서쪽 약800m), 변전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뱀새우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및 주택전시관,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설계 관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 구역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역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등층임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모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망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를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입주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자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내타이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변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교육 관련

- **초등학교생 : 통학구역 내 배치 가능**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
- **중·고등학생 : 학교군 내 배치 가능**
-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 ※ 개발사업지 인근의 공동주택분양 일정 및 검단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설여부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단, 관할 지자체의 의견 및 지역내 어린이집 공급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으로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이후 시 입주시기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하급단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 등은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이거나 초·중·고등학교 수가 없는 등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영구저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각 동 출입구 게시판 등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지시설은 기본 마감된 채 공급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관련

- 단지 인근에 고가도로, 지하차도, 방음벽, 방음터널, 완충녹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니, 사업부지의 주변현황을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지형 및 인접 등으로 일조 피해가 예상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주변 현황 및 단위세대 위치를 보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레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및 좌우면, 공용복도,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와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및 단위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진출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과 남측 경계부의 대지경계선 너머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단면조성계획에 따라 대지경계부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외부의 방음벽, 방음터널 및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의 세부 형태 및 길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경계부인 AA10-2BL의 대지경계부 공사결과에 따라 본 단지의 경계부위의 세부처리는 추후 공사 중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의 횡단보도는 단지 내부와 단지 외부에 걸쳐져 있으며, 대지경계선 내부의 유지관리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전력 인입을 위한 패드는 크기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관련

- 인허가 조건에 따라 부출입구는 입주자 전용 차량 출입구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차량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당점자는 계약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써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중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소방차량 주차구획선 표현은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 조경 식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중앙광장(드포엠파크), 그린카페, 게스트하우스, 휴게정원,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 조경등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및 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진입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P1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기와 같은 설비 환기기가 일부 1층 세대와 인접 또는 인접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종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와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차수조 및 기계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면적 및 부대시설 총합 면적을 동등 이상으로 맞추는 조건 하에 설비 및 지하주차장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이동하여 설치 할 수 없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 진입하는 통학차량의 경우 진입 후 회전차로(교통신)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 방식은 아파트주동: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하주차장: 철근콘크리트 무량판+라멘구조입니다.
- 동,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당첨 후 반드시 주택전시관내 모형도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 1층~지상 1층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게스트하우스, 주민운동시설, 그린카페, 그 외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기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연결이 안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 전장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2조에 따라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등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배에 감겨진 질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경 및 위생안테나, 웨더스테인션용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별,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가 101동~111동 옥상, 101동~104동, 106동~111동 입면부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발전예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101~111동 주동 옥상 및 주동 측벽에 설치되며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인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인이 부담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2동, 104동, 106동, 108동, 111동), 지하층(101동, 104동, 107동, 110동)
- 단지 위층방수용 안테나는 111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미세먼저 확인을 위해 웨더스테인션용 안테나는 111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단지 안전감시용 CCTV가 설치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101동, 109동, 110동, 111동)
-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 장비는 본공사 시 동호수 변경 따른 변경과 수량,위치,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등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로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및 필로티 내부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단지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의 주출입구가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동의 라인당 1개소씩, 총 26개소가 설치됩니다.(테라스동(112동, 113동, 114동 제외))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한전패드 및 맨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정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주택전시관 내 단지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합니다.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상가)주차장은 일반형주차 8대가 가능하며, 주차장 진입을 위해 아파트 차량과 차로를 공유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부 마감은 석재마감(충수 및 위치 상이함)과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위치와 높이가 상이하며, 1개층 필로티입니다.
- 배관정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1층에는 소방제연용DA와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일부 세대에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블,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등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111동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관리사무소와 어린이집의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바닥충격음과 주방의 냄새가 일부 세대에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7동 및 108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발전실 등이 설치되어 냄새, 매연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109동 110동, 111동은 지하주차장 내부 램프와 인접하여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블 및 기계실/전기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전기차충전시설(과급형 완속 81대, 급속 19대) 포함한 대수임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과급형 완속 충전시설은 콘센트 형으로서 추후 설치 대수 및 충전성능은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 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203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이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 입실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 들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 중앙광장, 부대시설 등 주변에 위치하고있는 동은 소음, 사생활 보호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내 유아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한 주거동에서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중앙광장(드포엠펙크)과 104동, 105동 남측에 그린카페 등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동은 해당 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자동제세동기를 지상1층 선큰 커뮤니티에 1대, 지하1층 선큰 커뮤니티에 1대, 총 2대 설치 예정입니다.
- 지하 1,2층에 빗물이용시설이 3개소 설치되어 조경용수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비는 공용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준공 시 유출지하수(영구배수) 발생량이 30톤/일 이상일 경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유지관리비는 공용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비율 및 ZEB(제로에너지빌딩) 등급 확보를 위하여 지하층 지열 및 연료전지 시스템이 계획되며, 해당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유지관리비는 공용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연료전지 시스템 가동 시 연도를 통하여 연소 공기가 배출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백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은 지열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되며, 시공사 일부 시공 범위 및 용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옥탑층에는 단지내 화재 안정성을 위하여 소화수조가 설치되며, 소방점검 및 유지관리 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

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유(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보조주방 및 실외기실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적용부위 내용은 평형 타입별 평면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성 자재(타일 등)의 경우 시공 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와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육,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전기선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월패드, 각종 스위치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확장 부위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 하향식 대피 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지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풍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설치 되는 세대분전함(전기/통신) 및 전기 관련 기기등의 위치, 타입, 수량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검토, 시공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미 알고 계시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차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1층에는 소방제연용DA와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일부 세대에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부대복리시설, 지하기계실, 전기실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중등

- 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피뢰침, 태양광판,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11동 옥상에는 TV/방송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방범용 동체 감지기는 지상1층, 2층(필로티 포함), 거실전층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채, 입면(창호 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충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이 서로 상이합니다.
- 각 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9동 110동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하는 냉난방용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실외기 설치 후 가동 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동·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실외 노출 복도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의 오배수 배관은 실외 노출 복도 천장속 공간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천장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휴게공간은 외기에 면해있어 우천시 비 들이침과 겨울에 눈이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12~114동의 1층 세대는 외벽 마감재에 매립되거나, 테라스 바닥을 관통하는 1층 세대의 우수관을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 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월 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강질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욕실 /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단위세대 거실 투시형 철재 난간대의 높이가 안전성 높이 설치되어, 거실창호로 일부 가구의 반입이 어렵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서 가능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사시장은 이중 창호[PI창]가 설치되며, 창호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성능(TDR값 제외)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 및 보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커튼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결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 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자재 내용은 평형별, Type 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와 높이, 사이즈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 장 뒷면 또는 측면에 가스 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의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에는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타입별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서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상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의 하향식피난구 공간에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2층 이상 세대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및 필로티 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나, 1층에 세대가 있는 2층의 경우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 84T타입은 1,2층에 계획되어 별도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PH타입은 최상층에 계획되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대피공간이 계획됩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월패드 등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어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등 천장에 구조를 위한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란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욕실에는 환기 및 온풍, 바디드라이, 헤어드라이, 헤어기능이 있는 복합 환풍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 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전시관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블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체 특성상 색상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및 욕실도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목 창호의 하드웨어(경첩, 스토퍼, 등)와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우물천장의 깊이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아트월(디자인월), 디자인패널 등 패널류의 마감재 나누기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배치, 동선, 복도폭, 수납량 등은 세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 타일마감에 의한 줄눈 나누기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타일 자체의 컬러나 문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물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 단자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설치를 위한 기본 냉매배관은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부형 기준으로 설치되며, 냉매박스 위치는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일부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 세대, 하부 1개 층 세대는 개폐 시 알림 경보가 울리게 됨)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 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1조) 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 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장 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 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 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분전반 및 전열 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상)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 식탁용 펜던트는 제공되지 않으며, 식탁용 전등은 다운라이트로 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냉장고 등 가전용 콘센트 위치는 각 타입의 냉장고장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일부 타입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 84T타입의 실외기실은 실외 테라스에서 진입하며,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환기장비가 설치됩니다.
- 84T타입은 테라스에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T타입의 테라스에는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빗물 배출을 위한 배수구만 설치 되어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PH타입의 외부 공간은 전용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으로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의 부주의로 외부공간 우수배관에 오배수 유출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84T타입은 테라스 하우스 특성상 단위세대가 외부에서 일부 보일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84PH타입은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대피공간이 계획되어있습니다.
- 84T타입은 테라스 하우스 특성상 주방 및 배면(현관쪽 방향)에 창호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 84PH타입의 외부공간은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며, 별도의 급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양변기 배수배관은 배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호칭경 75mm 저소음관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급수급탕배관은 수급탕 분배기 이중관 매립배관 방식으로 시공되며, 급수급탕 분배기는 화장실 천장속 공간 또는 하부세대 화장실 천장속 공간에 노출로 설치됩니다.
- 세대 다용도실에 가스배관 인입을 위해 커튼박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되며 2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환강기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은 주택전시관용 시설로 본 공사시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84C타입은 세대 발코니1과 실외기실 사이에 창고 가스가 계획되며, 해당 창고에는 별도의 난방 및 환기설비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T타입은 다용도실이 외기에 면하지 않아 별도의 배기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팬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입니다.
- 84T타입은 테라스하우스의 특성상 주방 및 욕실배기를 위한 직배기구가 전면 테라스에 설치되어, 팬 가동 시 일부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이점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난방 및 급탕 방식은 지역난방열원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84PH), 창고(84C)는 비난방구간으로 별도의 난방코일 및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현관 팬트리 및 주방팬트리는 결로 저감을 위한 난방코일이 설치되며, 해당 실은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개별 온도조절 불가)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벽체의 바탕재는 방수석고보드로서 입주자가 마감변경공사를 할 경우 석고보드 벽체의 방수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도면 비교하여 시공해야 함.)
- 111동 102호 59B 단위세대의 실외기그릴 창호 사이즈는 다른 타입의 단위세대와 사이즈와 높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TV 위치는 창호 개폐, 가전제품, 주방용품 배치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선택 유형별로 각 실의 콘센트, 통신포트, 스위치, 조명기구의 수량,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동(112~114동) 84T 단위세대는 전면에 계획된 휴게공간 및 단지 레벨상 소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일반형 988대, 확장형 570대, 경형 172대, 조업 11대, 장애인 58대, 전기차 100대(1,899대) 이용 시 주동으로의 진입이 불편한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 사항은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까지 차량 동선이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므로 입주자 차량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름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출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헬름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풍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자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헬스, 각종 계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에어컨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기방식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자연환기를 적극 적용하여 급기팬과 배기팬의 풍량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팬용 팬은 벽부형 또는 행거팬이 설치되어 팬 작동 시 소음, 진동, 기류에 의하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세대창고에는 제습기 및 배기팬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에 의한 전기료는 공용 전기료로 부과됩니다.

■ 홍보물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VR(단지 조정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2019.08.20. 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범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스, 세대단지, 단지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외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6.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전용보일러(다목)	적용 미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기준 준수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정밀스위치(마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정(22.7.29) 이후 신청분으로 해당사항 없음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백만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94,409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73,381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4,405		
	기간이자	16,590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2,711		
	필요적 경비	8,866			조적공사	3,602		가스설비공사	678		
	그밖의 비용	17,062			미장공사	8,489		자동제어설비공사	1,017		
	계	336,927			단열공사	2,001		특수설비공사	1,356		
공사비	토목	토공사			6,492	방수, 방습공사		4,019	공조설비공사	-	
		흙막이공사			-	목공사		6,954	전기설비공사	18,602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14,276	정보통신공사	7,698		
		옹벽공사			344	금속공사	1,384	소방설비공사	8,061		
		석축공사			-	지붕 및 흙통공사	1,418	승강기공사	4,330		
		우수, 오수공사			3,122	창호공사	6,971	일반관리비	8,046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818	이윤	5,364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5,987	계	267,159		
		도로포장공사			3,660	돌공사	4,753	간접비	부대비	설계비	5,703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2,068			감리비	9,888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2,468	일반분양시설 경비	1,849				
		조경공사	7,556	수장공사	4,003	분담금 및 부담금	12,806				
		부대시설공사	-	주방용구공사	5,787	보상비	-				
		건축	건축	공동가설공사	3,319	그 밖의 건축공사	6,638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65,986
				가시선통공사	3,269	계	96,233			그 밖의 비용	50,968
지정 및 기초공사	4,169			계	96,233						
철골공사	-			계	751,288						

9.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택지비 가산비													
택지비 기간이자	취득세		재산세			등기 수수료		말뚝박기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택지와 관련된 경비			소계
	취득세	교육세 (취득세)	재산세	교육세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보수료	인지세			가감속차로 택지비	가감속차로 조성비	지역난방 부담금	
16,590	5,888	589	1,237	247	866	39	1	14,079	379	782	33	1,787	42,517
건축비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지하 주차장 중고층가 공사비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승인 조건			소계	
	홈 네트워크	초고속 통신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 환기설비					외관특화 공사비	법정초과 조정시설설치비			
3,135	12,388	4,285	4,955	10,895	2,983	5,467	1,757	1,370	5,114	2,303		54,653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인천도시공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 국원건설	청암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선두종합건설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7-1, 4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47, 503호	인천광역시 용진군 영흥면 영흥로619번길 58-15, 1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0, 401호
사업자등록번호	131-82-08879	676-87-01904	106-81-33808	513-81-10906	134-81-58202	603-81-37149	131-81-64082

■ 건설사업관리자

구분	건설사업관리자			
	상 호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0(상일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학익동) 5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0층 1004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4층 415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1-15867	139-81-13044	408-81-42391	120-81-60091

11. 기타 (주택전시관, 공식홈페이지, 입주예정일 등)

■ 입주예정일 : 2026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며, 입주시정기간은 6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 ※ 입주시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 됩니다.

■ 홈페이지 :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홈페이지(<http://www.elife.co.kr>)

■ 주택전시관 위치 및 분양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번지 (☎032-278-1500)

■ 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디엘이앤씨(주),신동아건설(주),보광종합건설(주),국원건설(주),청암종합건설(주),선두종합건설(주))가 공동사업주체로 시행하며, 분양계약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를 인천도시공사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